

취업창업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03.01.

개정 2017.06.01.

개정 2017.09.01.

개정 2019.07.1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의 취업과 창업대책을 수립·추진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취업창업지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취업·창업대책 수립 및 추진
2. 각 기업체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취업 및 창업 확대
3. 취업·창업정보 수집 제공
4. 취업·창업지원 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각 스쿨(학과)의 취업창업담당 교원과 기타 센터장이 추천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5조(회의 및 의결정족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3월 위원회 최초구성에 따른 연간 취업창업 지원 대책 수립회의를 실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의절차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혹은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.

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전문위원 및 자문위원)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의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8조(관계부서의 협조) 삭제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, 전문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기타

제10조(기타)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④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